
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개정안

2021. 3.

고용노동부

1. 개정이유

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이 개정(법률 제17864호, 2021. 1. 5. 공포, 2021. 7. 6. 시행)됨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 산정 기준을 명확화하고, 교섭단위 결정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의 과반수 노조 산정, 공동교섭대표단 참여 여부 판단, 공동교섭대표단 결정 등에 필요한 “조합원”의 기준을 “종사근로자인 조합원”으로 변경함에 따라 시행규칙도 함께 변경
- 나.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에서 분리된 교섭단위의 통합근거가 명시됨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에서도 분리된 교섭단위의 통합 근거를 규정
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규칙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조합원 수”를 “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”로, 같은 조 제3호 중 “조합원”을 각각 “종사근로자인 조합원”으로 한다.

제1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조합원 수”를 “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조합원”을 각각 “종사근로자인 조합원”으로 한다.

제10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조합원”을 “종사근로자인 조합원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가목과 마목 중 “조합원”을 각각 “종사근로자인 조합원”으로 한다.

제10조의6제1항 중 “조합원 수”를 “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교섭대표조합”을 “교섭대표노동조합”으로 한다.

제10조의7제1항 중 “전체 조합원”을 “종사근로자인 전체 조합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조합원 수”를 “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”로 한다.

제10조의8의 제목을 “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”에서 “교섭단위 결정 신청”으로 변경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교섭단위 분리”를 “교섭단위의 분리 또는 분리된 교섭단위의 통합”으로, “분리 결정”은 “결정”으로, “분리할”을 “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할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분리 결정”을 “결정”으로 한다.

별지 제5호서식, 제7호의2서식, 제7호의3서식, 제7호의4서식, 제7호의5서식, 제7호의6서식, 제7호의7서식, 제7호의8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**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
신·구조문대비표**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의2(교섭의 요구) 영 제14조의2제2항에서 “노동조합의 명칭,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<u>조합원 수</u>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3.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<u>조합원</u>(법 제29조의2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에 소속된 <u>조합원</u>을 말한다)의 수</p>	<p>제10조의2(교섭의 요구) ----- ----- ----- <u>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<u>종사근로자인 조합원</u>----- ----- -----<u>종사근로자인 조합원</u>-----</p>
<p>제10조의4(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 등) ① 영 제14조의5제1항에서 “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,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<u>조합원 수</u>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<u>조합원</u>(법 제29조의2에 따른 교섭</p>	<p>제10조의4(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<u>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<u>종사근로자인 조합원</u>-----</p>

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을 말한다)의 수

제10조의5(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) ① (생략)

② 영 제14조의7제4항에서 "조합원 명부(조합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)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"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.

1. 노동조합에게 제출 요구하는 서류

가. 조합원 명부(조합원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) 또는 노동조합 가입원서

나. ~ 라. (생략)

마. 그 밖에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2. (생략)

가. ~ 라. (생략)

제10조의6(서류 제출 요구 등 조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 기준) ① 노동위원회는 영 제14조의7제3항에 따라 이의를 신

-----종사근로자인 조합원-----

제10조의5(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종사근로자인 조합원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가. -----종사근로자인 조합원-----

나. ~ 라. (현행과 같음)

마. -----종사근로자인 조합원-----

2. (현행과 같음)

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

제10조의6(서류 제출 요구 등 조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 기준) ① -----

② 법 제29조의3제3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8서식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-----

----- 결정 -----

-----.

노동단체카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앞쪽)

① 카드 구분	㉠ 설립 ㉡ 변경 ㉢ 해산	② 관할 행정 관청			
③ 명칭		④ 전체 근로자 수	총: 명 (여: 명)	⑤ 조합원 수	총: 명 (여: 명)
⑥ 주된 사무소 소재지				⑦ 전화번호	
⑧ 설립일	20	⑨ 기업 또는 사업장명	⑩ 산업 종류 코드 번호		⑪ 소속 연합 단체 약칭, 코드번호
⑫ 조직형태	㉣ 조직 단위 ㉤ 기업 ㉥ 사업장 ㉦ 특정지역 ㉧ 전국 ㉨ 조합 형태 ㉩ 단위노조 ㉪ 지부 ㉫ 분회 ㉬ 전국규모 산별단위노조 ㉭ 연합단체 ㉮ 총연합단체				
⑬ 습제도	㉯ 오픈 습 ㉺ 유니온 습 ㉻ 클로즈드 습	⑭ 대표자 임기	⑮ 대의원 수	명	⑯ 조합비 징수기준
⑰ 규약상 정기회의 개최시기	㉼ 총회: 월 ㉽ 대의원회: 월	⑱ 해산일	20	⑲ 해산 사유	㉿ 결의 ㊀ 합병 ㊁ 분할 ㊂ 노동위원회 의결(휴면노조) ㊃ 폐업 ㊄ 조합원 수 ㊅ 기타
⑳ 단체협약 유효기간	20 ~ 20	㊆ 임금협약 유효기간		20 ~ 20	
㉑ 단체협약 교섭방식	㊇ 기업별 ㊈ 통일 ㊉ 대각선 ㊒ 공동	㊓ 임금협약 교섭방식		㊇ 기업별 ㊈ 통일 ㊉ 대각선 ㊒ 공동	
㉒ 근로시간 면제자 수	합계 명 (풀타임 명, 파트타임 명)	㉔ 근로시간면제자 월 평균 보수			천원

㉕ 임원 현황

직책	성명	주민등록번호	선출기관	임기 (개시일~만료일)	근속연수	임원 재임연수

㉖ 산하지부 또는 분회 현황

명칭	소재지	대표자	전화번호	근로자 수			조합원 수		
				계	남	여	계	남	여

작성방법

- ②: 노동조합 관할 행정관청명(고용노동부 본부, 지방고용노동관서, 시·도, 시·군·구)을 기재합니다.
- ③: 노동조합 명칭을 기재(약칭이 아닌 노동조합 전체 명칭 기재) 합니다.
- ④: 조직형태가 기업별 노동조합인 경우 해당 사업장 근로자수 기재합니다.
- ⑨: 기업별(사업장별) 단위 노동조합의 경우 해당 기업 또는 사업장의 명칭을 기재합니다.
- ⑩: 조직대상 사업장의 주된 산업 종류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소단위 분류를 적습니다.
- ⑪: 소속 연합단체의 약칭과 코드를 적습니다.
- ⑫: 조합비 징수기준을 적습니다.
- ⑫, ⑬: ㉠기업별: 특정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의 기업별 노조와 그 사용자 간의 단체교섭을 말합니다.
 - ㉡통일교섭: 전국적(지역적) 규모의 산업별(직종별) 노조 또는 교섭권을 위임받은 상급단체와 이에 대응하는 사용자단체 또는 교섭권을 위임받은 사용자대표가 교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.
 - ㉢대각선교섭: 전국 단위의 산업별(직종별) 노동조합 또는 교섭권을 위임받은 상급단체가 개별 기업과 교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.
 - ㉣공동교섭: 개별 노동조합과 상급단체가 공동으로 개별 기업의 사용자와 교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.
- ⑭: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제24조에 따라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자를 기재합니다.
- ⑯: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번호를 적습니다. 임원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에 작성합니다.
 - 선출기관: 1. 총회 2. 대의원회
- ⑰: 산하지부 또는 분회현황은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에 작성합니다.

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: 10일
신청인	노동조합명	대표자
	소재지	
		(전화번호)
		(팩스번호)
피신청인	사업장명	대표자
	소재지	
		(전화번호)
		(팩스번호)
교섭요구일		공고일

신청 취지 및 이유(별지 작성 가능)

사용자가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」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공고하여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제29조의2제7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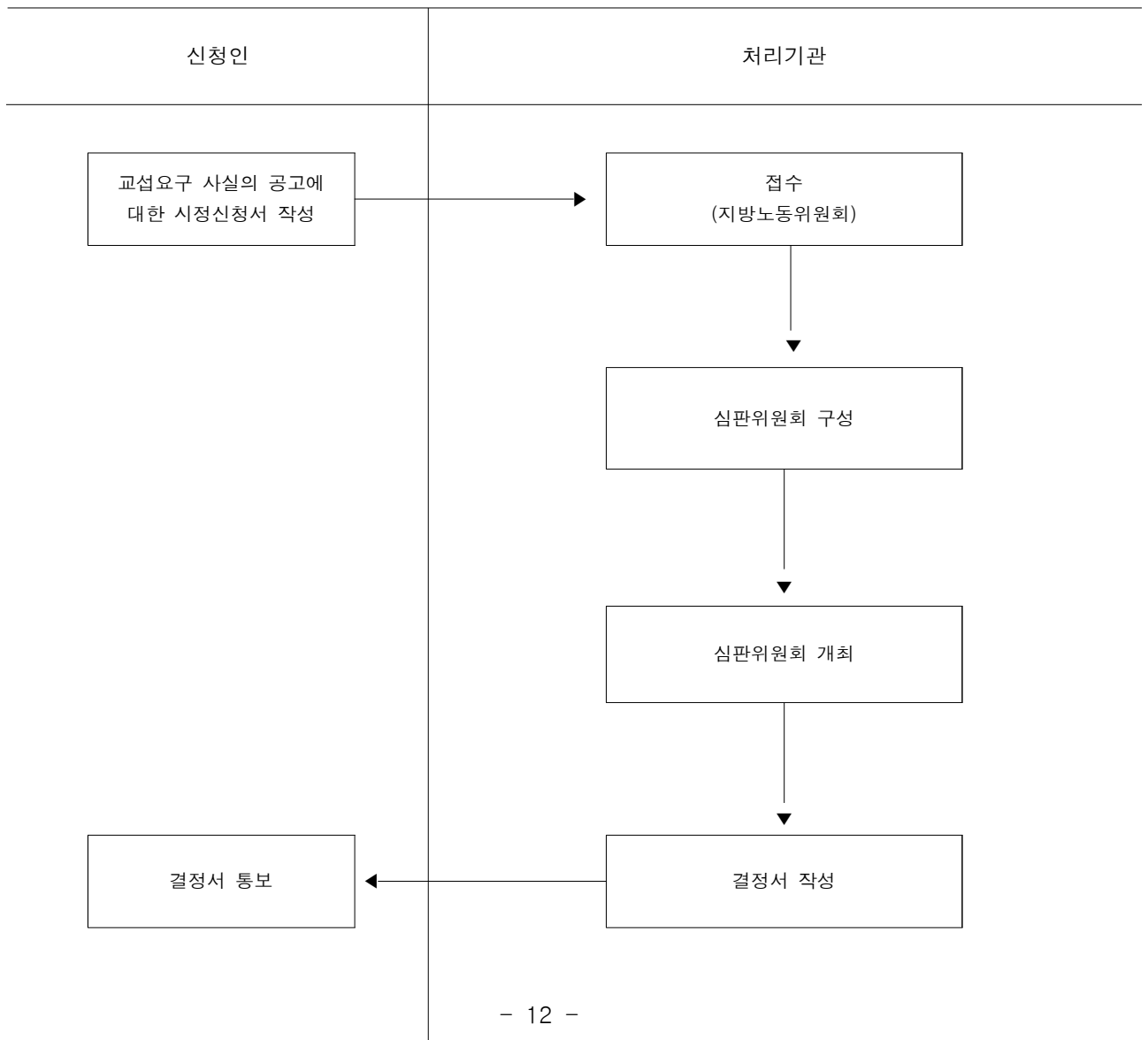
(서명 또는 인)

○○지방노동위원회 귀중

첨부서류	1.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서면 사본 2. 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이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

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서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: 10일
신청인	노동조합명	대표자
	소재지	(전화번호) (팩스번호)
피신청인	사업장명	대표자
	소재지	(전화번호) (팩스번호)
교섭요구일	공고일	

신청 취지 및 이유(별지 작성 가능)

사용자가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」 제14조의5제2항에 따른 사용자의 공고 내용에 대한 신청인의 이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자가 신청인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하여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제29조의2제7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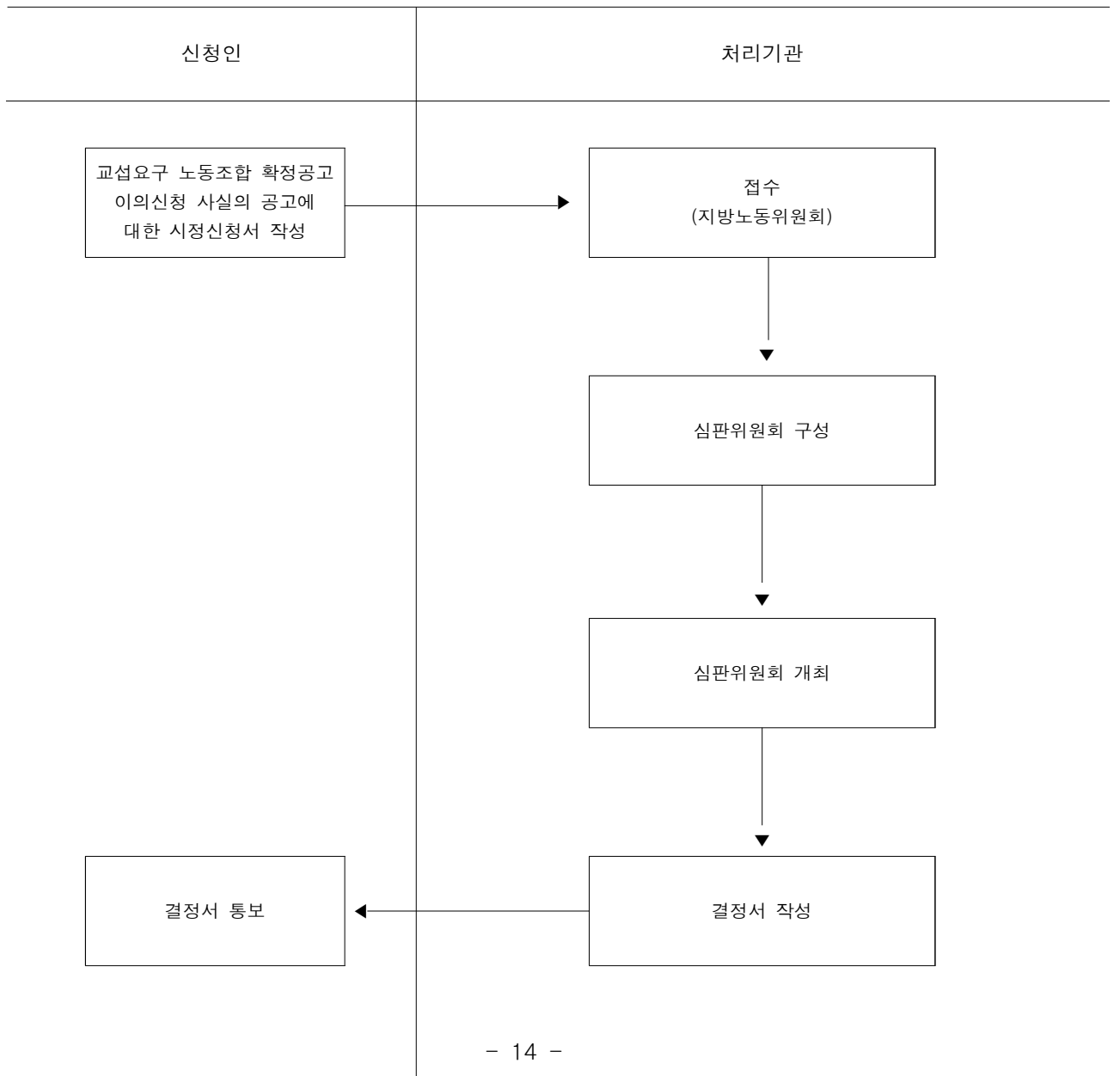
(서명 또는 인)

○○지방노동위원회 귀중

첨부서류	1. 사용자에게 이의를 신청한 서류 사본 2. 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이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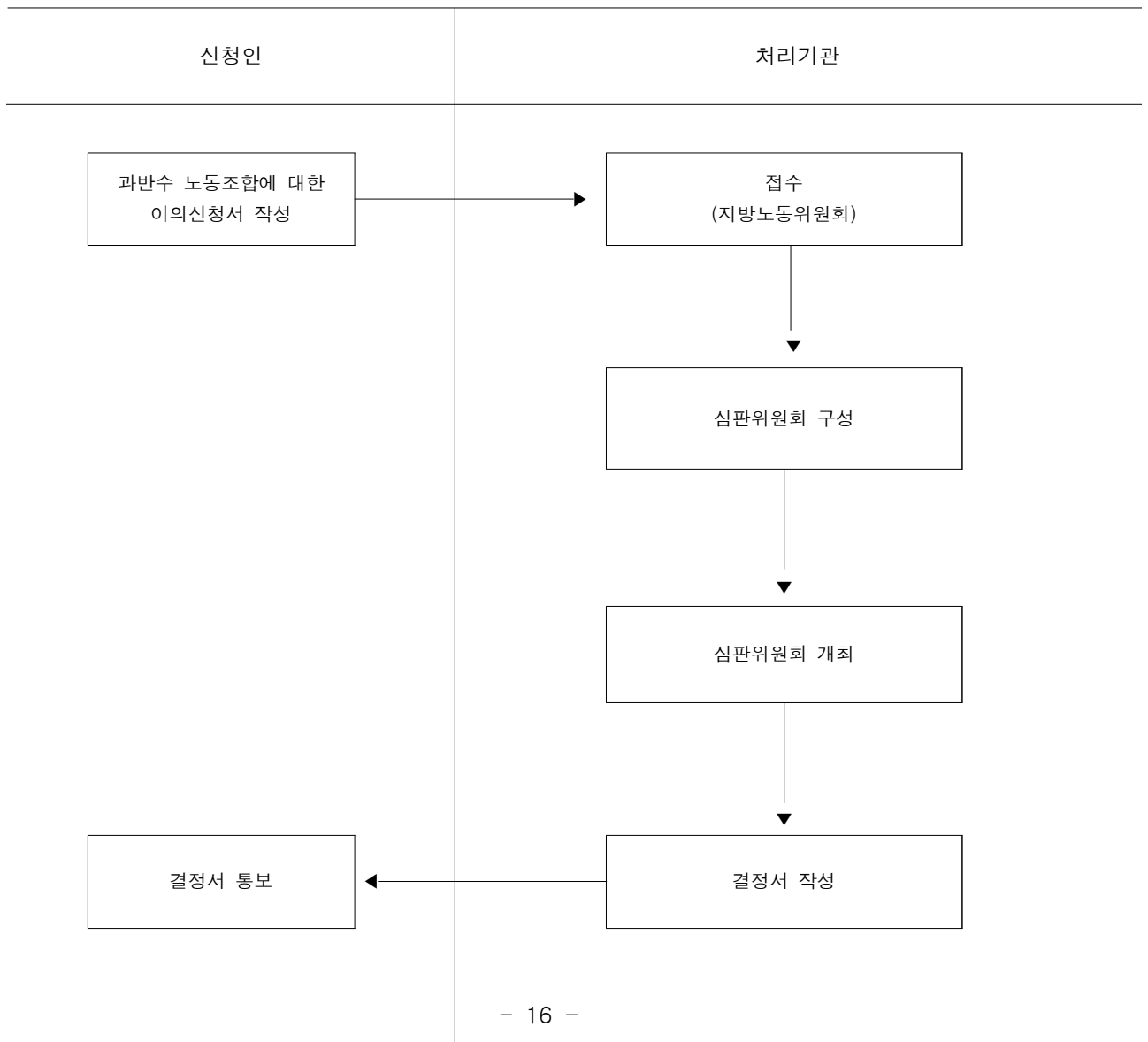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

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: 10일
신청인	노동조합명	조직형태 단위노조(기업, 지역, 전국), 연합단체, 단위노조의 산하조직
	대표자	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
	주된 사무소 소재지	(전화번호) (팩스번호)
	설립일	조직대상
사용자	사업장명	대표자
	소재지	(전화번호) (팩스번호)
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명 및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		

신청 취지 및 이유(별지 작성 가능)

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제29조의2제6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9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7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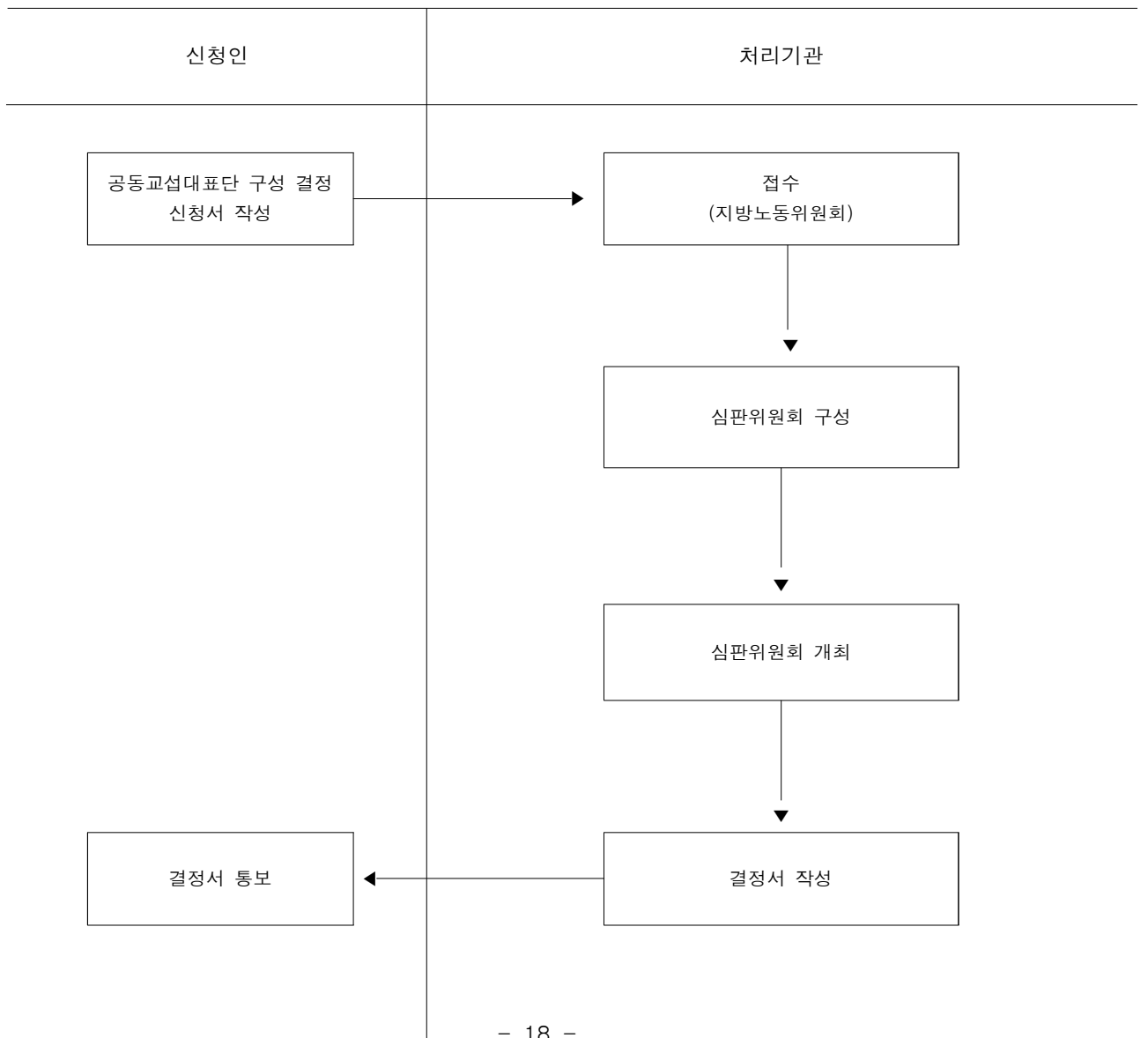
(서명 또는 인)

○○지방노동위원회 귀중

첨부서류	해당 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종사근로자인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

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: 10일
신청인	노동조합명	조직형태 단위노조(기업, 지역, 전국), 연합단체, 단위노조의 산하조직
	대표자	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
	주된 사무소 소재지	(전화번호) (팩스번호)
	설립일	조직대상
사용자	사업장명	대표자
	소재지	(전화번호) (팩스번호)

신청 취지 및 이유(별지 작성 가능)

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」 제14조의9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7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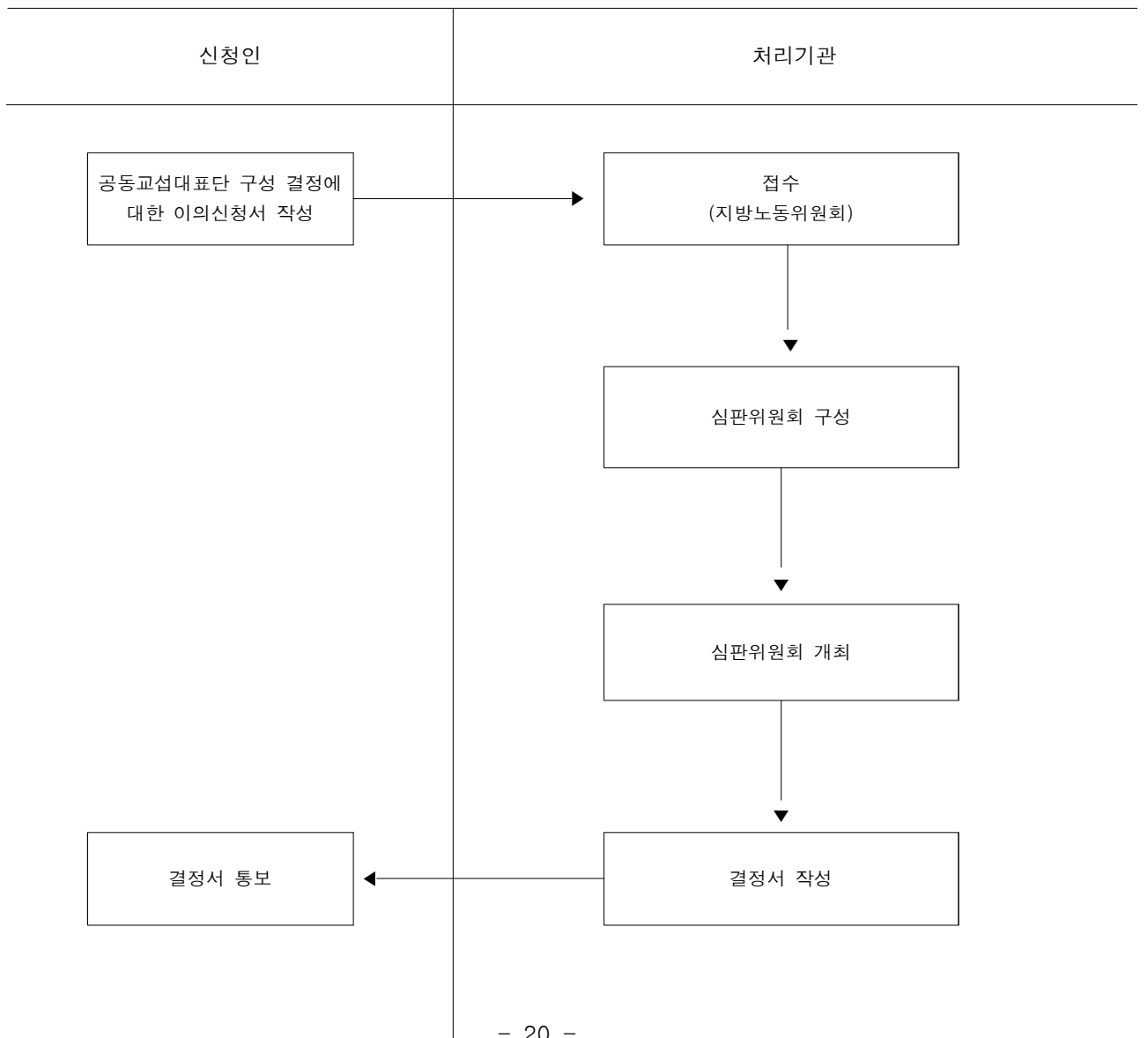
(서명 또는 인)

○○지방노동위원회 귀중

첨부서류	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및 비율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

교섭단위 분리 통합 결정 신청서

※ 에는 해당되는 곳에 “√”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,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: 30일
------	-----	-----------

신청인	<input type="checkbox"/> 노동조합	<input type="checkbox"/> 사용자
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노동 조합	조합명	조직형태 단위노조(기업, 지역, 전국), 연합단체, 단위노조의 산하조직
	대표자	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
	주된 사무소 소재지	(전화번호) (팩스번호)
	설립일	조직대상
사용자	사업장명	대표자
	소재지	(전화번호) (팩스번호)
	전화번호	주된 업종
	사업장 수	근로자 수

해당 사업(장)의 모든 노동조합 수 개

신청 취지 및 이유(별지 작성 가능)

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제29조의3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11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8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섭단위 결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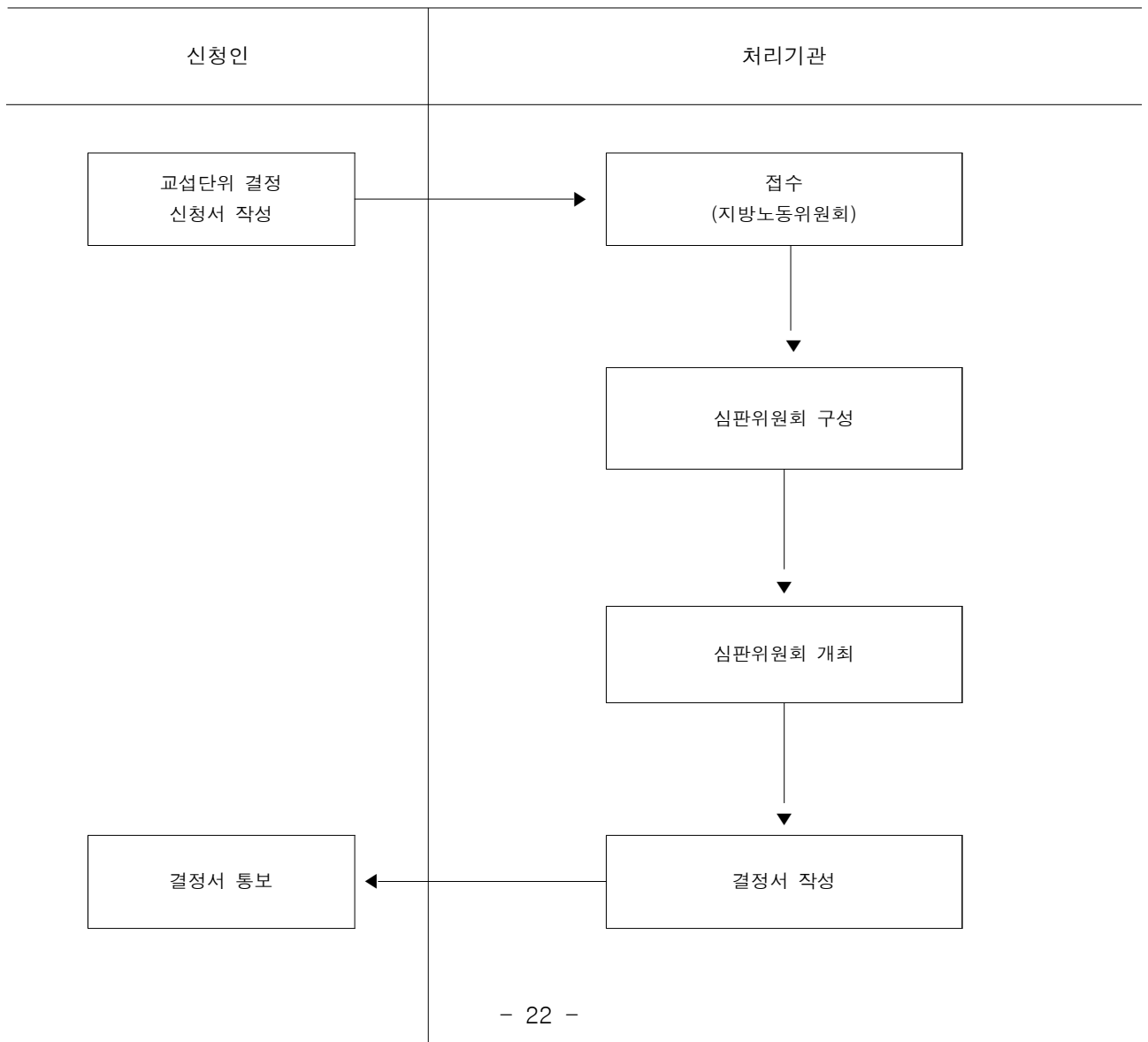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○○지방노동위원회 귀중

첨부서류	현격한 근로조건 차이, 고용형태, 교섭 관행 등 교섭단위를 분리 또는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※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별지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